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산업재해크레딧 도입 〉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714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산업재해크레딧 도입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 기관 의견	11

I. 개요

1.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71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6. 3. 24.
- (3) 회 부 일 : 2026. 3.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해당 가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자발적 소득 상실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으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가 오히려 근로관계가 종료된 실직자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호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산업재해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단절되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이 지연되거나 연금액이 감소하는 등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하여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고, 해당 기간에는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소득을 산정하여 사업장가입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보험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산업재해크레딧 도입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이하 “휴업급여”라 한다)를 받는 기간을 최대 2년까지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되, 그 기간에는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산업재해크레딧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3(산업재해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이 경우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사업장가입자로 보고,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휴업급여의 원인이 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때의 사용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용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처리 등 업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그 밖

현행	개정안
	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해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급여를 받는 자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회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2024년도 연간 휴업급여 수급자는 총 174,659명으로, 휴업급여 지급 총액은 1조 9,260억 6,200만원임.²⁾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024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2025년 10월.

□ 개정안은 휴업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최대 2년까지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여주는 산업재해크레딧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한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게 된 재해근로자의 불가피한 가입이력 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첫째, 현행법에서는 재해근로자가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더라도 최대 119개월까지 연금보험료를 사후적으로 납부함으로써 가입이력을 보충할 수 있는 ‘추납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재해근로자가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현행법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납부 의무자(사용자)는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해당 가입자는 같은 법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여 가입이력을 보충할 수 있음.³⁾

3)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따라서, 산업재해크레딧의 도입 외에도 휴업급여 수급 기간 중의 가입이력 상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재해크레딧 도입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은 산업재해크레딧에 따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행법에서는 군복무·출산·실업크레딧의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군복무크레딧4)’나 ‘전부 또는 일부(출산크레딧5)’를 부담하게 하거나, 수익자와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이 각각 같은 비율로 분담(실업크레딧6)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4)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5) 「국민연금법」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6)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5(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일반회계,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고용보험법」

제55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수급자격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25의 범위로 한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4조(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① 영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이 고시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합으로 한다.

② 영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부담하는 비율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의 4분의 1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각 기금별 부담액은 동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원 미만은 버린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안 제19조의3에서는 산업재해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누가 얼마씩을 부담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실업크레딧 사례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에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산업재해크레딧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기금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임.

□ 셋째, 현행법에서는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 등에 대하여만 실업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산업재해크레딧의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을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민연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서, 현행법은 저소득 가입자 등에 대한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⁷⁾ 개정안의 산업재해크레딧과 유사한 실업크레딧의 경우에도 재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입자 등에 대하여만 이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허용하고 있음.⁸⁾

7)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삭제 <2025. 4. 2.>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각 목 생략)

한편 안 제19조의3제3항에서는 산업재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70%를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고시한 ‘2026년도 최고 보상기준 금액(1일 268,299원)’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70%는 약 560만원인바,⁹⁾ 보건복지부장관이 현행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637만원¹⁰⁾)의 약 88.5%에 이르는 수준의

8)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2조(재산 및 소득기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산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호에 따른 각 재산의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2. 소득기준 : 영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680만원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I.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68,299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으로 한다.

II.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0)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④ 가입자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 및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00천원

휴업급여를 받는 재해근로자에게까지 그 수급 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여주는 것이 수익자 부담의 사회보험 원칙에 부합하는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실업크레딧의 경우에는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하되, 그 상한은 70만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

□ 넷째, 크레딧제도는 종전의 가입이력만 있으면 그 적용 당시의 가입자 종별이나 자격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이 가능하게끔 운영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크레딧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현행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안 제19조의3제1항 후단은 이를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됨.

- 한편, 안 제19조의3제1항 후단의 취지가 휴업급여의 원인이 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당시의 사용자로 하여금 산업재해 크레딧의 적용에 따른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려는 것이라면,

산업재해크레딧을 적용받는 휴업급여 수급자인 재해근로자를

나. 상한액 : 6,370천원

2. 적용기간 : 2025년도 7월분부터 2026년도 6월분까지

11)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3조(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소득의 상한선은 70만원, 하한선은 영 제5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사업장가입자로 의제하는 대신 그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별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다섯째, 현행법 제49조¹²⁾ 각 호의 급여를 산정할 때 산업재해 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반영할 것인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현행법 제19조의2제4항¹³⁾에서는 실업크레딧으로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을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에는 반영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장애연금·유족연금의 기본연금액에는 반영하지 아니하되,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결정하는 제74조¹⁴⁾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2)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13)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④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14) 「국민연금법」

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개정안에 따른 산업재해크레딧이 도입되면 재해근로자의 급여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개정안에는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소요되는 연금보험료 납부 주체에 대한 조항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의 보험료 지원사업 사례(실업크레딧·두루누리 사회보험 등) 등을 참고하여 연금보험료 납부 주체가 명시될 필요가 있고,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산업재해크레딧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연금기금의 지원은 적당하지 아니함.

□ (기획예산처) 신중검토

- 크레딧제도의 확대는 도입 필요성, 재원 부담 주체 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이며, 기존 크레딧의 경우에도 이해당사자 간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결과를 법에 명시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근로복지공단) 신중검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은 실질임금 외에도 다양한 산정 방식¹⁵⁾을 인정하고 있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는 그 의미가 서로 달라 야기될 수 있는 혼선과 ‘요양을 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요양기간이

15) 평균임금은 근무형태, 업무상 질병 여부, 임금자료 존재 여부 등에 따라 평균임금, 평균보수, 고시임금, 특례임금, 통계임금 등으로 산정 방식이 다양함.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의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는 별개인바, 국민연금 가입 자격 관리 및 연금보험료 산정 등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고유 사무에 해당하므로 그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행정력이 과부하인 상황에서 추가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예산 소요가 발생하여 행정비용이 급증하고 업무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권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민감한 사항으로서 실제 관리주체(국민연금공단)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대행할 경우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므로 국민의 불편이 커질 소지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6